제주콘텐츠코리아랩 공간 이용 지침

제정 2020.10.14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별관 1층, 지하 1층에 소재한 제주콘텐츠코리아랩(이하 '제주콘랩'이라 함) 운영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이용자: 제주콘랩을 이용하는 모든 자
- 2. 회원: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 이용 지침」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자(홈페이지상 회원가입)
- 3. 운영자: 제주콘랩 운영을 담당하는 관계자
- 4. 입주자 또는 입주기업: 진흥원에서 정하는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 개인 및 기업

제3조(개관 및 휴관) 제주콘랩은 다음 각 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평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 1. 법정공휴일(토·일요일이 법정공휴일과 겹칠 경우 휴관일로 한다) 및 국가가 정한 임시휴일
- 2. 시설점검이나 보수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3. 그 외 천재지변 및 운영기관의 폐업 등의 사유로 제주콘랩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이용시간) 제주콘랩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제주콘랩 별관1층과 지하1층은 회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평일 9시부터 21시까지, 지하1 층은 회원,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연중무휴 운영한다.
- 2. 시설 및 물품의 사용 및 대여 시간은 제1항 개관 시간 안에서 정한다
- 3. 제주콘랩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수 있다. 단, 제1항의 개관 시간 안에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 운영 시 반드시 사전에 운영자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출입제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1. 음주를 한 자
- 2.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
- 3. 재난 도난 상해 등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자
- 4.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단, 법정대리인을 동반하는 경우 허용)
-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제주콘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6조(행위의 제한) 제주콘랩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행위 발각 시 제주콘랩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 1. 등록 또는 신청 시 허위내용의 등록
- 2. 제주콘랩 내 소란스러운 행위 및 기타 타인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행위
- 3. 프로그램 운영 시 진행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4. 도난 행위를 했을 경우
- 5. 타인의 정보도용
- 6.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내에서의 영업 활동 등 상업행위
- 7. 타인을 스톡(Stalk)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 8.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 9. 대여시설 및 물품을 반출하는 행위
- 10. 대여시설 및 물품 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11. 소음 등 공해의 발생 업무방해 등으로 타 회원 및 제주콘랩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12. 타인에 대하여 불쾌감을 주거나 회원 개인 물품을 적치 및 방치 하는 행위
- 13. 인화성 폭발성 위험이 있는 물품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품을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 14. 사전 통지 없이 냉난방용 기자재를 반입 사용하는 행위
- 15. 제주콘랩 내 흡연 및 음주 행위
- 16.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 17.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 18. 기타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관리 필요에 따른 담당자의 요청사항에 따르지 않는 행위

제 2장 시설 및 물품의 사용

제7조(권한) 시설 및 물품 사용 권한은 다음과 같이 부여한다.

- 1.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은 회원에 한한다. (전문 장비에 한하여 기본 교육을 이수한 자)
- 2. 시설 및 물품의 점검보수보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대여) 시설 및 물품은 다음과 같이 대여한다.

1. 시설 및 물품의 대여는 회원에 한하며 회원의 등록 탈퇴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회원 이용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출입의 제한 구역) 이용자의 안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설에 출입 구역을 두고 운영한다.

- 1. 제주콘랩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한다.
- 가. 인포데스크
- 나. 지하1층 경비실
- 다. 기업 입주공간
- 라. 그 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
- 2.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관을 명하거나 그 기간을 정하여 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범위) 제주콘랩 내 시설 부대설비 포함은 다음과 같다.

- 1. 제주콘랩 시설은 사용신청 및 관계자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대여시설과 이용자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용시설, 기타 부대시설 및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으로 한다.
- 2. 창작공간 및 창작장비는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창작장비 운영 지침」에 따라 이용 범위를 정하고 별도로 관리한다.

제11조(시설의 종류) 제주콘랩 시설은 제10조(시설의 범위)에 따라 대여시설 공용시설 부대시설 물품으로

분류하고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대여시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워킹스페이스3: 별관1층 1개실 30석 규모, 강연·세미나 및 네트워크 공간
- 2. 공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카페테리아: 별관1층 30석 규모
- 나. 오픈스튜디오
- 다. 미디어 회의실: 별관1층 3개실 8석 규모, 회의공간
- 라. 회의실: 본관 지하1층 3개실 8석 규모,
- 3.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인포데스크
- 4.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영상: 프로젝터, 스크린, TV모니터 등
- 나. 음향: 스피커, 엠프, 무선 마이크 등
- 다. 업무용품: 강의용 노트북, 복사기, 화이트보드 등
- 라. 편의용품: 냉장고 등
- 마. 소포품: 리모콘, 각종 케이블, 마커, 지우개, 레이저포인트, 인쇄용지 등
- 바. 기타 회원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
- 5. 창작공간 및 창작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촬영스튜디오: 지하1층 1개실
- 나. 녹음실: 지하1층 1개실
- 다. 영상편집실: 지하1층 4석 규모
- 라. 시제품제작실: 지하1층 1개실
- 마. 창작장비: 지하1층 노트북 5대
- 6.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의 추가 및 삭감 등의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시간) 시설의 사용시간은 「제주 콘텐츠코리아 랩 공간 운영 지침」제4조(이용시간)에 따라 운영된다.

제13조(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 이용자는 시설 사용 시 다음과 같이 주의의무를 다 하고 시설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해야 한다

- 1. 이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2. 이용자는 시설의 사용을 완료한 후 사용시설을 원상복구 및 정리하고 운영자의 확인 후 퇴실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제 항의 사용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에 대하여 훼손 또는 망실의 손해를 유발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 항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1. 행사 내용이 이용자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사
- 2.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거나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사
- 3. 영리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교육 전시 등
- 4. 기타 정치선전 특정 종교적 색채가 짙은 행사 사회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사
- 5. 제12조(사용시간) 및 제13조(사용 주의의무 및 손해배상)를 위배하는 자

제15조(사용신청) '대여시설' 사용은 신청제로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1. '대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제주콘텐츠코리아랩 공간 이용 신청서」(양식1, 이하 '신청서'라 함)를 작성하여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대여시설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신청인은 회원에 한한다.
- 3. 운영자는 대여시설 사용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접수 받았을 때, 이를 검토한 후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1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대여시설 신청 및 접수 처리는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 5. 제주콘랩 운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여시설 사용신청 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16조(대여신청 및 이용방법) 제주콘랩 대여시설 및 공용시설의 이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대여시설: 워킹스페이스3,
- ① 신청방법: 제주 콘텐츠코리아랩 공간 이용 신청서(양식1) 작성 및 날인 후 운영자 메일 제출(승인제)
- ② 예약가능기한: 사용 4주 전부터 2주 전까지
- ③ 신청대상: 문화콘텐츠 관련 스타트업 및 유관기관
- ④ 신청내용: 문화콘텐츠 및 취·창업 관련된 비영리 목적의 행사, 전시, 교육 등
- 2. 공용시설:
- ① 예약시간: 당일 예약 당일 이용
- ② 이용방법: 현장 방문하여 인포데스크에 이용 가능한 시설 확인 후 입실확인서 작성 후 1회 2시간, 1일 최대4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사용이 필요할 경우, 인포데스크에서 이용 종료 예정시간 30분 전 운영자와 협의 후 예약자가 없을 시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기타 유영상 필요 및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여신청 및 예약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대여 우선순위) 대여신청이 중복된 경우에는 제주콘랩 자체프로그램에 우선 대여하고 이하 타 기관 및 개인의 대여 신청은 운영상 필요 및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18조(대여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여를 하지 않는다.

- 1. 대여에 따른 원상복구 및 정리 손해배상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 2. 대여 조건을 어겨 대여의 취소사실이 있는 자
- 3. 사용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 4. 대여조건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19조(대여내용의 변경) 운영상 필요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를 거쳐 이미 승인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신청제한 및 취소 등)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여신청을 받지 않을 수 있다.

- 가. 시설을 훼손·망실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유지 관리상 부적절한 행사
- 나. 대여조건 및 사용 주의의무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 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대여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제21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시설을 대여한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이용자는 대여목적 이외의 행사를 하여서는 안된다
- 2. 이용자는 대여 받은 범위 내의 시설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사용 후에는 대여시설 및 사용물품 등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4. 행사에 수반되는 물품의 반입 설치, 철거 시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5. 이용자는 물품 및 기타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사항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의 협조 하에 동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 6. 사용 중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 7. 이용자는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인적·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8. 시설의 훼손 및 망실 등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콘랩이 정한 기준에 의거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액을 배상 하여야 한다.
- 9. 기타 발생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제주콘랩 운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22조(광고 홍보문의 협의) 이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제주콘랩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 3장 시설 및 물품의 사용

제23조(시설 및 물품 사용료) 시설 및 물품의 사용은 무료로 하고 기타 부가사항은 별도협약에 따른다.

제24조(회원 가입비) 회원 가입비는 무료로 한다.

제25조(복사·인쇄 요금) 복사인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회원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하며 1인 1일 10매로 제한을 둔다. 해당 제한은 이월되지 않는다.

제26조(시설 및 물품의 훼손 망실 등 변상) 시설 및 물품의 훼손 및 망실에 대한 변상은 다음과 같다.

- 1. 시설 및 물품의 훼손 망실 시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2. 시설 및 물품의 훼손 시 수리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하고, 망실 시에는 동일 현품 변상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완료 후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3. 현품변상이 어려울 경우 현 시가로 변상한다

제 4장 안전사고 주의 및 책임

제27조(안전사고) 제주콘랩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이용자는 제주콘랩 내에서 재난 및 도난·분실, 상해 등 안전사고 인적·물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용자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 및 이용자 본인과 다른 이용자의 피해와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 2. 이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